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 철저 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41조 제14호에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요즘 서울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 롤러 조종 무면허로 일하는 현장이 많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하오니, 건설공사 현장에서 면허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소속 회원사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수신자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담당사무관 한성훈 건설업관리팀 박성규 건설혁신담당관전결 07/07
관 이은영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담당관-10478 (2026. 7. 7.) 접수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 건 / http://www.seoul.go.kr
설혁신담당관 (서소문동)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h10515@seoul.go.kr / 부분공개(5)

이 문서는 서울시의 승인없이 수정할 수 없습니다.